

2025년 궁능유적본부(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) 공무직 등 근로자 공개경쟁채용(2차) 최종합격자 공고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2025년 2차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9일

궁능유적본부장

□ 최종 합격자 명단

응시분야	직종	근무지	응시번호	합격자	비고
시설물관리원 다급	공무직	고양 서삼릉	03	한○○	
		파주 삼릉	-	적격자 없음	
	공무/촉탁직	화성 융릉과 건릉	01	김○○	
			08	김○○	
안전관리원 주간	공무직	화성 융릉과 건릉	02	김○○	
	공무직	양주 온릉	03	양○○	
안전관리원 야간	공무직	광명 영회원	01	김○○	
			06	이○○	
매수표원	공무직	고양 서오릉	15	원○○	
시설물청소원	공무직	화성 융릉과 건릉	-	-	

※ 최종합격자는 별도 연락 예정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- 제출일시
 - 2025. 4. 15.(화) 10:00
- 제출장소: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(서오릉)
- 제출서류
 - 채용신체검사서 1부 [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대체]
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* [붙임 1] 양식에 작성

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- 반명함판 사진 1장 및 통장사본 1부, 도장
- 결격사유 확인서 1부 * [붙임 2] 양식에 작성
- *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

□ 공지사항

-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☎ 02-359-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5년 10월 0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 청구 대상 아님
-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,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.
-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10월 05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 처리 할 예정입니다.
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 2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.
 3.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. 끝.

(붙임 1)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번호 등·초본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) 번호 : 123456-1234567(입력)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생년월일 :
전화번호 :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채용기준 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5년 월 일

채용 예정자: (서명)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귀하

(붙임 3)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
주 소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
반환청구서류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